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최*철님 귀하
(경유)

제목 민원회신(사전조제첩약 관련)

안녕하십니까?

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,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민원 요지>

-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중 교통사고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한의 첩약 사전조제시 위법 여부 관련

<회신 내용>

○ 첩약은 기존 한약서(정평있는 한약서)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,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[별표2] “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” 버-1 한방 첩약(1첩당)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에,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첩약 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.

- 따라서,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해서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도 전에 미리 원외탕전원 등에 대량으로 한방 첩약을 일괄 조제를 의뢰하고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첩약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 (044-201-4762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운영보
험과 직원

시설사무관

전결 2023. 9. 22.

협조자

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-6725

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, 자동차운영보험과 자 / 동차보험팀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4762 팩스번호 044-201-5587 / ohyejin@molit.go.kr / 비공개(6)

"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."